

의안번호	제 29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연종석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연종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

발 의 자 : 연종석, 이수완, 윤남진,
김기창, 오영탁, 이상식

1. 제안이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충북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(안 제2조)

나. 산학융합지구 지원 및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4조)

다.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
라.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,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규정(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)

마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 :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19. 9. 24. ~ 2019. 10. 6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”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충청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.
2.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(이하 “산학융합지구”라 한다)의 특화업종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업종을 말한다.
3. “사업 수행주체 기관”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) 충청북도지사는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활성화 지원)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.

1.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바이오산업 등 산학협력 사업 육성 및 진흥 사업
3.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기업창업·보육사업
4. 기업·연구소·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
5. 교통 및 거주환경, 편의시설 등의 개량·확충 사업
6.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 1항에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의 평가)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설치)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.

1.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
2.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
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도의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,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.

⑥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의2. "산학융합지구"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·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
제22조의4(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)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5(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[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]

제29조의5(산학융합지구 지정)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

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산학융합지구의 명칭·범위
2.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
3.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·연구소의 집적 방안
4. 교육 및 연구·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
5.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·개발 사업의 수행계획
6.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

[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]

제39조(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·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추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*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원에 따른 제비용

*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, 바이오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등

3. 관련조문

- 제6조(활성화 지원)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.
 1.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2.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진흥 사업
 3.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, 기업 창업·보육 사업
 4. 기업·연구소·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
 5. 교통 및 거주환경, 편의시설 등의 개량·확충 사업
 6.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1조(위원회 운영)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□ 재정수반요인

-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* 및 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등

□ 추계의 전제 : 산학융합지구 추진사업에 따라 결정

□ 추계결과 : 도비 23억 원 정도

□ 재정 조달방안 :

※ 위원회 운영경비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

※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확정되지 않은 시점으로 추계 불가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도비)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
세 출	11,650	2,330	2,330	2,330	2,330	2,330
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	10,075	2,015	2,015	2,015	2,015	2,015
출연금 (인건비 및 경상비 등)	1,500	300	300	300	300	300
위원회 참석수당	75	15	15	15	15	15